

의안번호	제 146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9월 일 (제 263 회)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9월 3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6
----------	-----

제출연월일 : 2007년 9월 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재산등록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직윤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위촉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정비(안 제2조)
-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조사의뢰, 주식백지신탁된 주식의 기간연장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도, 시·군 위원회간 재산심사권 변경에 따라 우리도 위원회에서 심사할 공직자대상을 조정 (안 제3조)
- 안전심사 및 의결시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하고, 재산등록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및 조사의뢰, 성실신고 등에 대한 징계벌칙 요구와 관련된 해당 법조항을 정비 (안 제6조)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안 제8조)
- 도의회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조항 신설 (안 제9조)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임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하고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위원회”를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항 제2호중 “제8조제11항”을 “제8조제12항”으로, 같은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4.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승인

제3조제2항1호중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을 “충청북도 소속 4급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제2호중 “충청북도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을 “충청북도의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군의회 의원 및 시·군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 단서중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하고, 같은항 제1호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항 제4호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 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u>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u>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공직자윤리법</u>」----- ----- -----<u>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u>----- ----- -----.</p>
<p>제2조(구성) ① <u>위원회</u>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u></p> <p>2.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2조(구성) ① <u>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 -----.</p> <p>1. <u>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u></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① (생략)</p> <p>1. <u>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u></p> <p>2. <u>법 제8조제11항</u>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p> <p>3. (생략)</p> <p>4. <u>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u></p> <p>5. (신설)</p> <p>② (생략)</p> <p>1. <u>충청북도 소속 공무원</u>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p> <p>2. <u>충청북도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u>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p> <p>3. (신설)</p>	<p>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1. 「<u>공직자윤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u>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30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u></p> <p>2. -----<u>제8조제12항</u>----- -----</p> <p>3. (현행과 같음)</p> <p>4. <u>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u> 규정에 의한 승인</p> <p>5. <u>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u></p> <p>② (현행과 같음)</p> <p>1. <u>충청북도 소속 4급이하 공무원</u>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p> <p>2. <u>충청북도의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u>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p> <p>3. <u>시·군의회 의원 및 시·군의 4급 공무원</u>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생략) 3. (생략)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 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p>	<p>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출석위원 ----- -----.</p> <p>1. ----제8조제7항----- -----제8조제12항-----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 ----- -----</p>
<p>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p>	<p>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 (신설)</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p>

관계법령 발췌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8조, 제9조, 제14조4, 제20조의2, 제24조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 제15조의2, 제19조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7.12.13, 1997.12.31, 1999.1.21, 1999.12.31, 2000.12.29, 2001.1.26, 2003.3.12, 2005.12.29, 2006.2.21>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6. 대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8.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
 - 8의2.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9.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 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11.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②삭제 <1993.6.11>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나 자료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고서나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94.12.31>
-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신설 1994.12.31, 1997.12.31>
- ⑥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 ⑦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⑧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31>
- ⑩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한 후 3월이내에 재산공개대상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심사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 ⑪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그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⑫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31>
- [전문개정 1993.6.11]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2006.12.28>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2001.1.26>

④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1993.6.11, 1997.12.13>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신설 1993.6.11>

제14조의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자 중 제12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된 회사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제7조·제8조·제8조의2·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18]

제20조의2 (국회 등에의 보고 <개정 2006.12.28>)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

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재산등록거부의 죄) ①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6.11]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 (등록의무자) ①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01.6.30, 2005.2.11>

②법 제3조제6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라 함은 2급이상의 군무원을 말한다.

③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9.12.7, 2000.4.18, 2001.4.27, 2001.11.29, 2005.2.11, 2005.7.26, 2006.6.29, 2006.8.17>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 내지 다목과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 가목·나목과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2.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4. 감사원 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4의2.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공무원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경감·경위·경사 및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자치경사
6.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과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
7.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8.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9.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읍·면·동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 9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10.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

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11.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12. 금융감독원의 2급 이상 직원

④제3항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부서는 당해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이 정한다. <신설 2001.4.27, 2001.6.30>

제15조의2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법 제9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7.6.21]

제19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4.12.31, 2005.2.1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부칙<제20099호, 2007.6.21>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관할(령 제15조의2 관련)

윤리위원회	관 할 공 무 원
특별시·광역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가. 시·군·구 의회의원 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4급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마. 시·도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가.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나. 가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 시·군·구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생략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 및 시·도 의회의원과 그 퇴직공직자 나. 교육감, 교육위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그 퇴직공직자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과 그 퇴직공직자 마. 다목 및 라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바.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 자치총경(자치경찰단장, 4급 상당)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 및 그 퇴직자를 포함한다.
2. 4급에 상당하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이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다목·제2호나목·제3호가목의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나목·제2호나목·제3호가목의 지도관을 말한다.
3. 3급 이상에 상당하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나목, 제2호가목의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가목, 제2호가목의 지도관을 말한다.